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3 발의연월일: 2020. 8. 18.

발 의 자:소병철ㆍ권칠승ㆍ김남국

김병기 · 김정호 · 송재호

오영화 • 유미향 • 유후덕

아수진비 · 주철현 · 진성준

홍익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18. 3. 13. 제정되고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6호).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이 2017. 4. 18. 제정되고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

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 호 및 안 제6조제7호).

기존 「의료기기법」에서는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2019. 4. 30. 제정되고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7호).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위생용품"으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생용품 관리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행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 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경찰관리)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 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 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 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 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 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 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 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9.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 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화장 품·의료기기 단속 사무 및 --의료기기·위생용품----「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 험·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 53. (생략) 10. ~ 53. (현행과 같음)

혀 햀 개 정 아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 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______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 6. -----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 역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 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 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u>「식품 등의 표시·</u> 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광고에 관한 법률 . -----조치법 |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 7. -----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 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화장품법」・「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 사 등에 관한 법률 | · 「위생용 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품 관리법 | · 「체외진단의료기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기법 _ ----관한 범죄

8. ~ 50. (현행과 같음)

8. ~ 50. (생략)